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진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0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4일
발 의 자 : 정진철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제리·이상훈·김소양
권영희·최정순·김춘례
최 선·박기재·송아량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는 충돌 발생 시 어린이의 상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등 본래 목적의 보호 성능이 미흡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. 반면에 3점식 안전띠는 3개의 지지점이 좌석에 고정돼 어깨와 허리, 복부를 감싸는 형태로 상체를 붙잡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음. 또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(FMVSS·Federal Motor-Vehicle Safety Standard)은 소형 통학버스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면충돌 시 2점식보다 3점식이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근거임.

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안전운행하도록 강조하고,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용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개발을 촉진하고, 어린이차량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7호).
-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8호).
-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운행 의무를 신설함(안 제15조제1항).
-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재정지원 기준 신설함(안 제15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교통안전법」,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어린이통학버스”라 함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8. “3점식 좌석안전띠”라 함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)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15조</u>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어린이통학버스”라 함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</u></p> <p>8. <u>“3점식 좌석안전띠”라 함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.</u></p> <p><u>제15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)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6조</u>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(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)에 따라 3점식 좌석안전띠 구입 지원비용 발생
 - ※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3점식 좌석안전띠를 정의하고 안 제15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운행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, 서울시 재정 지출의 순증가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3점식 좌석안전띠 구입 지원비용

나. 전제

-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자료가 없어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당 1대씩 운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*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체육시설 등 시설에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의미(도로교통법 제2조)
- 서울시 어린이 통학버스에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지원시기(일시 혹은 순차)의 차이만 있을 뿐 5년간 총 발생비용은 동일하므로, 5년간 균등 배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 계산
- 어린이 통학버스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승차정원이 매우 다양하나 25인승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5인승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

※ 어린이 통학버스 승차정원별 현황

승차정원	25인승 미만	25~44인승	45인승 이상	합계
버스대수	84,790	10,713	2,284	97,787

자료: 경찰청(2018), 어린이 통학버스 승차정원별 통계

다. 추계기간 : 5년

라. 방법

- 3점식 좌석안전띠는 제품별로 1개당 29,500원 ~ 129,000원에 판매(네이버쇼핑 판매 상위노출, 10개 제품, 20.10.13 기준)하고 있어 평균단가 62,179원 적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= 9,357,94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계
		○	-	-	-	-	-	-
세입	○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○ 3점식 좌석안전띠 구입 지원비용(안 제15조제2항)	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9,357,940
	소계(b)	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9,357,940
□ 총 비용(b-a)		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1,871,588	9,357,94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이수아

☎ 02-2180-7944

e-mail : sua887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3점식 좌석안전띠 구입 지원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- 3점식 좌석안전띠 구입 지원비용 ≒ 9,357,94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3점식좌석안전띠구입지원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간 3점식 좌석안전띠 구입 지원비용

=지원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대수×차량당 좌석개수×구입단가

=1,204대×25개×62,179원

=1,871,588천원

※ 지원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대수=전체대상(6,020대)÷5년=1,204대

(단위: 명)

구분	어린이집	유치원	초등학교	특수학교	학원	체육시설	합계
통학버스	1,103	1,046	417	100	2,603	751	6,020

자료: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현장관리팀(2020.9.), 어린이집 차량운행 현황, 교육부 통학버스 정보 시스템(2020.9),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차량 신고현황,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(2019.6) 서울시 공공체육시설현황

주: 체육시설 통학버스 차량대수는 서울시 공공체육시설당 1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가정

※ 구입단가 : 제품별로 1개당 29,500원~129,000원에 판매(네이버쇼핑 판매 상위노출, 10개 제품, 20.10.13 기준)하고 있어 평균단가 62,179원 적용

구분	가격(원)	제품이미지	구분	가격(원)	제품이미지	구분	가격(원)	제품이미지
1	33,790		5	49,440		9	95,000	
2	41,720		6	33,540		10	29,500	
3	75,000		7	129,000				
4	95,000		8	39,800				